

부천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 100 호
의결년월일	98. 12. 26 (제67회)

제출년월일 : 1998. 12. 24

제 출 자 : 실업극복특위위원장

제안이유

-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함.

주요골자

○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방안
-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
-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등 기타

○ 구성(안 제3조) : 12인 이내

- 근로자 위원 2명
- 사용자 위원 2명
- 부천시 위원 1명
- 부천시의회 의원 2명
- 지방노동사무소 위원 1명
-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 회의(안 제5조)

-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실무협의회(안 제6조) : 10인 이내

- 근로자 대표 2명
- 사용자, 부천시, 지방노동사무소 대표 각 1명
-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 성실히행의무(안 제11조)

- 각 경제주체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제안 조례안 : 불입

부천시지역노사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본 조례는 당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실업극복을 위하여 부천시의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합의의 도출과 그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부천시지역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2. 실업극복을 위한 현안문제의 해결방안
3.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등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중앙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방안
5.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1. 근로자 위원 2명
2. 사용자 위원 2명
3. 부천시 위원 1명
4. 부천시의회 위원 2명
5. 지방노동부사무소 위원 1명
6.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②위원장은 부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각계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부천시를 대표하는 위원은 지역경제국장으로서 한다.

④관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한다.

⑤시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⑥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부천시 대표 1명, 노동부지방사무소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약간명 등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위원이 겸한다.

제7조(관계공무원 및 직원의 파견)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성신행의무) 각 경제주체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